

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- 가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의안번호 : 제2421호
- 다. 제출일자 : 2021. 5. 25.
- 라. 회부일자 : 2021. 5. 31.

2. 제안사유

-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하철 분야에 출자기관인 서울교통공사를 운영하고 있음
- 서울 지하철은 개통 된 지 30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 노후화가 가중되고 있어,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량이 필요함
- 이에, 지하철 노후차량 개선지원 사업에 최초로 국비를 확보하고 그에 대한 지방비 매칭분을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자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출자개요

- 대상기관 : 서울교통공사

기관현황

- 설립일자 : 2017. 05. 31
- 설립목적 : 지하철 건설·운영(서울지하철 1~8호선) 및 부대사업
도시교통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
- 위 치 :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(용답동)
- 조 직
 - 본 사 : 6본부, 9실, 45처 / 현 업 : 1부문, 2원, 6단, 57센터, 42사업소
- 인 원 : 정원 16,771명 / 현원 16,846명
- 지원시설 : 해당없음

- 관련법령 : 지방공기업법 제49조

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나. 주요 사업

-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
-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
- 지하철역 출입구 캐노피 설치
- 지하철 환기구 개선
-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

다. 출자의 필요성

- 우리시는 지난 2017년부터 노후차량 교체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지하철 신규 건설 수준의 대규모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음
- 2020년 「도시철도법」 일부개정에 따라 노후차량 교체사업에 대한 국비를 최초 확보하게 됨에 따라 시 재정부담을 덜게 된 바, 이 기회를 활용하여 시민안전을 담보하는 노후차량 교체사업이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비 매칭분 마련이 시급함
- 또한 사회적 약자도 동등하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시설물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나, 운영기관 재정난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- 예산조치 : 2021년도 추경예산편성

-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동의안의 개요

- 동 동의안은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출자금을 2021회계연도 추가경정 예산으로 출자하기 이전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

※ 참고 :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검토의견

■ '21년 지하철 분야 출자 내용(추경 예산편성)

- 서울시는 2021년도 예산으로 1,697억 72백만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출자금으로 편성한 바 있으며, 이번 추경을 통해 총 398억 3백만원(23.4%)을 추가 증액하여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

동 동의안은 지하철 이용편의 증진시설 설치(26억 77백만원), 지하철역사 공기질 개선(136억 31백만원), 지하철역 출입구 캐노피 설치(3억 원), 지하철 환기구 개선(2억 5천만원)에 추가로

필요한 예산편성과 도시철도법¹⁾ 개정으로 최초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 사업(229억 45백만원)의 신규 예산편성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

※ 서울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 사업관련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9년		2020년		2021년			비 고
	본예산	추경	본예산	추경	본예산	추경(안)	증감액	
합 계	43,168	51,999	87,377	43,000	26,907	66,710	39,803	
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	24,068	24,868	34,600	40,300	17,050	19,727	2,677	시비
지하역사 공기질 개선	17,500	26,081	49,227	-	8,277	21,908	13,631	국비:시비 =3:7
지하철역 출입구 캐노피 설치	1,600	-	2,300	2,700	1,000	1,300	300	시비
지하철 환기구 개선	-	1,050	1,250	-	580	830	250	시비
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	-	-	-	-	-	22,945	22,945	신규 사업 (국비지원)

주 : “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” 2021년 본예산은 순수 출자금 현황이며, “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”사업 국비지원 비율은 25%(지방비 75%는 시와 공사 50%씩 매칭)

■ 출자 동의안 의의

-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「지방재정법」 제 18조제1항2)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「지

1) 「도시철도법」 2021.1.12.일 개정, 7.13일 시행

제22조(정부 지원 등) ⑦ 정부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시철도운영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2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

방공기업법」 제49조3)에 따라 설립된 서울교통공사는 동법 제17조4)에 근거하여 출자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5)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음

- 이에 동 동의안은 '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출자 내용과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자 동의 여부를 시의회에서 미리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자 금액은 향후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의회 심의6)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임

■ 출자 동의 필요성

- 서울교통공사는 2020년 기준 영업연장 357.4km, 지하철역 331개역, 전동차 3,850량을 운영하면서 일평균 약530만명의 승객을 수송하고 있으나 총수익 1조 6,107억원, 총비용 2조 7,244억원으로 당기순손실 1조 1,137억원, 부채 6조 2,635억원 등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

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- 3)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(설립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.
- 4)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7조(출자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(出資)를 할 수 있다.
- 5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 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- 6)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출자·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기준 통보(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- 5653호, 2015.10.19.)

- 특히,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승객 감소에 따른 운임수입 감소와 노인·장애인·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무임수송,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제 시행, 5년간 요금동결 등으로 수송원가 대비 평균운임율⁷⁾이 46.2%에 불과한 실정으로 공사 자체 운영수입만으로 서울지하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임
- 따라서,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, 이용편의시설 신설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의 추진을 공사 자체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지하철 이용 시민의 편의제공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예산에 대한 출자 동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
- 특히, 노후 전동차 개선 사업은 그 동안 국비 지원이 없이 추진하였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국토교통부가 예산 지원계획⁸⁾을 수립중으로 2021년 약 506억을 지원할 예정이나 공사 및 시 재정여건을 고려한 국비매칭을 통해 조속한 노후전동차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자 동의가 필요함

7) 지하철 일인당 수송원가

(’20년 결산기준, 단위 : 원)

구 분	수송원가	평균운임	부족액	수송원가 대비 평균운임율
서울교통공사	2,067	954	1,113	46.2%

※ 수송원가 = 총괄원가(영업비용+자본비용(관리운영권상각비 미포함))/수송인원(승차인원기준)

※ 평균운임 = 운수수입/승차인원 ※ 부족액 = 수송원가-평균운임

※ 수송원가대비 평균운임율 = 평균운임/수송원가

8) 노후전동차 국비지원 계획(국토부 (안))

○ 지원 대상 : 노후전동차 2,350칸 중 1,608칸(既 계약 완료 742칸 제외)

○ 예산편성기준 (국비 25%, 지방비 75%)

- 총 예산 1조 2,578억 원(전체 국비 3,145억 중 '21년 국비 506억 원)

※ 차수별 지원율 : 1차년도-50%, 2차년도-30%, 3차년도-20%

- 지방비 중 75%(9,434억 원)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50%씩 매칭

○ 지원 방식 : 해당연도 발주분에 대해 3년 분할 교부

- 다만, 동의안의 의결은 관련법에 의거 출자 내용과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출자 여부를 사전 승인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심의 등을 통해 서울교통공사 매칭예산 투입여력, 국비지원 현황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,

아울러 서울시는 출자된 예산을 철저히 관리·감독하여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이 적절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